|  |  |  |
| --- | --- | --- |
| **녹색식품 마크 관리방법**  농업부 령 [2012] 제6호  《녹색식품 마크 관리방법》이 2012년 6월 13일 농업부의 제7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韓長賦  2012년 7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녹색식품 마크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여 녹색식품의 신용도를 높이고 녹색식품활동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생산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녹색식품이라 함은 우월한 생태환경에서 녹색식품 기준에 맞게 품질에 대한 전반통제를 실시하여 생산하고 녹색식품 마크 사용권을 취득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용농산물 및 그 제품을 말한다.  **제3조** 녹색식품 마크는 합법적으로 등록한 브랜드의 증명으로서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녹색식품 및 녹색식품 마크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는 녹색식품 마크 사용신청에 대한 심사, 증서발급, 증서발급 후의 추적검사 활동을 책임지고 실시한다.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 산하의 녹색식품 업무기구(이하 성급 업무기구라 함)는 본 행정구역 내의 녹색식품 마크 사용신청의 수리, 1차 심사 및 증서발급 후의 추적검사 업무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6조** 녹색식품 생산지의 환경, 생산기술, 제품품질, 포장, 보관, 운수 등 표준과 규범은 농업부에서 제정하여 반포한다.  **제7조** 농색식품의 생산과 생산지 환경검측을 의뢰하는 기술기구는 이에 어울리는 검측 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법적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 공평, 공정, 경쟁의 원칙에서 지정하여 농업부에 보고, 비안(備案)한다.  **제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녹색식품 생산을 권장하고 지원하며 이 활동을 본 지역 농업 및 농촌 경제발전기획에 편입시켜 녹색식품 생산기지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제2장 마크 사용 신청과 확인**  **제9조** 녹색식품 마크사용을 신청하는 제품은《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등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하고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의 확인을 받은 범위에서 하기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제품이나 제품원료 생산지의 환경이 녹색식품 생산지 환경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2) 농약, 비료, 사료, 수의 약 등 투입물 사용이 녹색식품 투입물 사용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3) 제품품질이 녹색식품 제품 품질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4) 포장, 보관, 운수가 녹색식품 포장, 보관, 운수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10조** 녹색식품 마크 사용을 신청하는 생산단위(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하기 각호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1) 독자적인 민사책임 부담능력이 있어야 한다.  (2) 녹색식품 생산 환경과 생산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3) 완벽한 품질 관리 및 보장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4) 생산규모에 어울리는 기술진과 품질통제 담당인원이 있어야 한다.  (5) 안정적인 생산기지가 있어야 한다.  (6) 지난 3년 동안 신청자에게 품질 안전사고나 신용 불량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11조** 신청인은 성급 업무기구에 신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하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마크 사용신청서  (2) 자격 증명자료  (3) 제품생산 기술규정과 품질통제규범  (4) 미포장제품의 포장라벨이나 그 디자인샘플  (5) 중국 녹색식품 발전센터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증명자료.  **제12조** 성급 업무기구는 신청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내에 자료심사를 완료하고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을 수리하며, 동시에 제품 및 제품원료 생산기간 내에 자격이 있는 검사임원이 현장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은 수리를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현장검사에 합격된 경우 성급 업무기구는 신청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하며, 신청인은 이 방법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검측기구에 의뢰하여 신청한 제품과 그 생산지 환경에 대한 검측을 받아야 한다. 현장검사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성급 업무기구에서 신청서를 반환하고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제13조** 신청인의 의뢰를 받은 검측기구는 즉시 현지 샘플링을 진행하며, 동시에 제품 샘플링 일로부터 20일 근무일, 환경 샘플링 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검측작업을 필하고 제품 품질검측 보고서와 생산지 환경검측 보고서를 성급 업무기구와 신청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측기구는 검측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4조** 성급 업무기구는 제품검측보고서와 생산지 환경검측보고서 입수일로부터 20일 근무일내에 1차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1차 심사에 합격된 경우 1차 심사 의견과 관련 자료를 중국 녹색식품 발전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1차 심사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환하며, 동시에 서면보고서를 발송하여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성급 업무기구는 1차 삼시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5조**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는 성급 업무기구에서 보고한 신청자료를 입수한 날로부터 30일 근무일내에 서면심사를 완료하고 다시 20일 근무일내에 전문가평의를 조직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현장 실사를 해야 한다.  **제16조**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는 전문가 평의의견에 근거하여 5일 근무일내에 증서 발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증서발급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과 녹색식품 마크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녹색식품 마크 사용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공시해야 한다. 증서발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제17조** 녹색식품 마크 사용증서는 신청인이 녹색식품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증빙으로서 거기에는 사용을 인가한 제품의 명칭, 브랜드명칭, 증서 취득단위 및 그 정보코드, 인가된 생산량, 제품코드, 마크사용 유효기간, 증서발급기구 등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녹색식품 마크 사용증서는 중문본과 영문본이 있으며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녹색식품 마크 사용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녹색식품 마크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마크 사용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성급 업무기구에 유효기간 연기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성급 업무기구는 40일 근무일내에 관련 검사, 검측 및 자료 확인을 완료해야 한다. 1차 심사에 합격된 경우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는 10일 근무일내에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효기간 연장을 인가하는 경우 마크 사용자와 녹색식품 마크 사용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녹색식품 마크 사용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유효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마크 사용자에게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마크 사용자가 기간을 경과하여도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지만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녹색식품 마크를 계속 사용하지 못한다.  **제3장 마크 사용에 대한 관리**  **제19조** 마크사용자는 마크사용증서 유효기간 내에 하기 권리를 향유한다.  (1) 증서를 취득한 제품 및 그 포장, 라벨, 설명서에 녹색식품 마크 사용  (2) 증서를 취득한 제품의 광고, 전시판매 등 시장 판매활동에서 녹색식품 마크 사용  (3) 농산물 생산기지 건설, 농업 표준화 생산, 산업화 운영, 농산물 시장 판매활동 등에서 관련 지원정책의 우선향유.  **제20조** 마크 사용자는 증서 유효기간에 하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녹색식품 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녹색식품 생산지의 환경과 제품품질의 안전 및 신용을 수호해야 한다.  (2) 마크 사용계약과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녹색식품 마크 사용규범을 지켜야 한다.  (3)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의 감독과 검사 및 그 산하 녹색식품 업무기구의 추적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21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의 인가를 받지 않고 녹색식품 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녹색식품 마크를 인가된 제품이외에 사용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2조** 증서 유효기간에 마크 사용자의 단위명칭, 제품의 명칭, 제품의 브랜드 등이 변경된 경우 성급 업무기구의 확인을 받고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에 신고하여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생산지의 환경, 생산기술 등 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제품이 녹색식품 표준요구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마크 사용자는 즉시 마크사용을 중지하고 성급 업무기구를 거쳐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감독 검사**  **제23조** 마크 사용자는 제품의 품질 통제시스템을 건전히 하고 이를 실시해야 하며 그가 생산하는 녹색식품의 품질과 신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2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녹색식품 마크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법에 따라 관할구역의 식품생산 환경, 제품품질, 포장라벨, 마크사용 등 상황을 감독 검사해야 한다.  **제25조**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와 성급 업무기구는 녹색식품 위험예방 및 응급대처제도를 수립하고 녹색식품 및 마크 사용상황을 추적 검사해야 한다.  성급 업무기구는 관할구역 내 녹색식품 마크 사용자의 녹색식품 마크 사용상황에 대한 연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마크 사용증서에 연차검사 합격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제26조** 마크 사용자에게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는 그 마크 사용권을 취소하고 마크 사용증서를 몰수하는 동시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1) 생산 환경이 녹색식품 환경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2) 제품의 품질이 녹색식품 품질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3) 연차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상황  (4) 마크 사용계약서의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  (5) 마크와 증서 사용규정을 위반한 상황  (6) 사기, 회뢰 등 부당한 수단으로 마크 사용권을 취득한 상황.  전항의 규정에 따라 마크 사용권을 취소당한 마크 사용자는 3년 내에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 그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의 신청을 영구 수리하지 않는다.  **제27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녹색식품 마크와 마크 사용증서를 위조,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국가는 녹색식품이나 그 마크 사용상황에 대한 단위나 개인의 사회적 감독을 권장한다.  **제29조** 녹색식품의 검측, 심사확인, 감독 활동에 임하는 임직원의 직권남용, 사리를 위한 부정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거나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녹색식품 제품이나 그 생산지 환경검측을 의뢰받은 기술기구에서 검측결과를 위조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는 동시에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는 그의 녹색식품 제품 및 생산지 환경 검측자격을 영구 취소한다.  **제30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는《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등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장 부 칙**  **제31조** 녹색식품 마크와 관련한 수금 방법과 표준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2조** 이 방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부에서 1993년 1월 11일에 인쇄 발부한《녹색식품 마크 관리방법》(1993農(綠)字제1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  | **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  农业部令012年第6号  　　《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已经2012年6月13日农业部第7次常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2年10月1日起施行。  　　　　　　　　　　　　　　　　　　　　　　　　　　　　　 部长：韩长赋  　　 2012年7月30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绿色食品标志使用管理，确保绿色食品信誉，促进绿色食品事业健康发展，维护生产经营者和消费者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和《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绿色食品，是指产自优良生态环境、按照绿色食品标准生产、实行全程质量控制并获得绿色食品标志使用权的安全、优质食用农产品及相关产品。  **第三条** 绿色食品标志依法注册为证明商标，受法律保护。  **第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依法对绿色食品及绿色食品标志进行监督管理。  **第五条** 中国绿色食品发展中心负责全国绿色食品标志使用申请的审查、颁证和颁证后跟踪检查工作。  　　省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所属绿色食品工作机构（以下简称省级工作机构）负责本行政区域绿色食品标志使用申请的受理、初审和颁证后跟踪检查工作。  **第六条** 绿色食品产地环境、生产技术、产品质量、包装贮运等标准和规范，由农业部制定并发布。  **第七条** 承担绿色食品产品和产地环境检测工作的技术机构，应当具备相应的检测条件和能力，并依法经过资质认定，由中国绿色食品发展中心按照公平、公正、竞争的原则择优指定并报农业部备案。  **第八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鼓励和扶持绿色食品生产，将其纳入本地农业和农村经济发展规划，支持绿色食品生产基地建设。    **第二章 标志使用申请与核准**  **第九条** 申请使用绿色食品标志的产品，应当符合《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和《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等法律法规规定，在国家工商总局商标局核定的范围内，并具备下列条件：  　　（一）产品或产品原料产地环境符合绿色食品产地环境质量标准；  　　（二）农药、肥料、饲料、兽药等投入品使用符合绿色食品投入品使用准则；  　　（三）产品质量符合绿色食品产品质量标准；  　　（四）包装贮运符合绿色食品包装贮运标准。  **第十条** 申请使用绿色食品标志的生产单位（以下简称申请人），应当具备下列条件：  　　（一）能够独立承担民事责任；  　　（二）具有绿色食品生产的环境条件和生产技术；  　　（三）具有完善的质量管理和质量保证体系；  　　（四）具有与生产规模相适应的生产技术人员和质量控制人员；  　　（五）具有稳定的生产基地；  　　（六）申请前三年内无质量安全事故和不良诚信记录。  **第十一条** 申请人应当向省级工作机构提出申请，并提交下列材料：  　　（一）标志使用申请书；  　　（二）资质证明材料；  　　（三）产品生产技术规程和质量控制规范；  　　（四）预包装产品包装标签或其设计样张；  　　（五）中国绿色食品发展中心规定提交的其他证明材料。  **第十二条** 省级工作机构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十个工作日内完成材料审查。符合要求的，予以受理，并在产品及产品原料生产期内组织有资质的检查员完成现场检查；不符合要求的，不予受理，书面通知申请人并告知理由。  　　现场检查合格的，省级工作机构应当书面通知申请人，由申请人委托符合第七条规定的检测机构对申请产品和相应的产地环境进行检测；现场检查不合格的，省级工作机构应当退回申请并书面告知理由。  **第十三条** 检测机构接受申请人委托后，应当及时安排现场抽样，并自产品样品抽样之日起二十个工作日内、环境样品抽样之日起三十个工作日内完成检测工作，出具产品质量检验报告和产地环境监测报告，提交省级工作机构和申请人。  　　检测机构应当对检测结果负责。  **第十四条** 省级工作机构应当自收到产品检验报告和产地环境监测报告之日起二十个工作日内提出初审意见。初审合格的，将初审意见及相关材料报送中国绿色食品发展中心。初审不合格的，退回申请并书面告知理由。  　　省级工作机构应当对初审结果负责。  **第十五条** 中国绿色食品发展中心应当自收到省级工作机构报送的申请材料之日起三十个工作日内完成书面审查，并在二十个工作日内组织专家评审。必要时，应当进行现场核查。  **第十六条** 中国绿色食品发展中心应当根据专家评审的意见，在五个工作日内作出是否颁证的决定。同意颁证的，与申请人签订绿色食品标志使用合同，颁发绿色食品标志使用证书，并公告；不同意颁证的，书面通知申请人并告知理由。  **第十七条** 绿色食品标志使用证书是申请人合法使用绿色食品标志的凭证，应当载明准许使用的产品名称、商标名称、获证单位及其信息编码、核准产量、产品编号、标志使用有效期、颁证机构等内容。  　　绿色食品标志使用证书分中文、英文版本，具有同等效力。  **第十八条** 绿色食品标志使用证书有效期三年。  　　证书有效期满，需要继续使用绿色食品标志的，标志使用人应当在有效期满三个月前向省级工作机构书面提出续展申请。省级工作机构应当在四十个工作日内组织完成相关检查、检测及材料审核。初审合格的，由中国绿色食品发展中心在十个工作日内作出是否准予续展的决定。准予续展的，与标志使用人续签绿色食品标志使用合同，颁发新的绿色食品标志使用证书并公告；不予续展的，书面通知标志使用人并告知理由。  　　标志使用人逾期未提出续展申请，或者申请续展未获通过的，不得继续使用绿色食品标志。    **第三章 标志使用管理**  **第十九条** 标志使用人在证书有效期内享有下列权利：  　　（一）在获证产品及其包装、标签、说明书上使用绿色食品标志；  　　（二）在获证产品的广告宣传、展览展销等市场营销活动中使用绿色食品标志；  　　（三）在农产品生产基地建设、农业标准化生产、产业化经营、农产品市场营销等方面优先享受相关扶持政策。  **第二十条** 标志使用人在证书有效期内应当履行下列义务：  　　（一）严格执行绿色食品标准，保持绿色食品产地环境和产品质量稳定可靠；  　　（二）遵守标志使用合同及相关规定，规范使用绿色食品标志；  　　（三）积极配合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的监督检查及其所属绿色食品工作机构的跟踪检查。  **第二十一条** 未经中国绿色食品发展中心许可，任何单位和个人不得使用绿色食品标志。  　　禁止将绿色食品标志用于非许可产品及其经营性活动。  **第二十二条** 在证书有效期内，标志使用人的单位名称、产品名称、产品商标等发生变化的，应当经省级工作机构审核后向中国绿色食品发展中心申请办理变更手续。  　　产地环境、生产技术等条件发生变化，导致产品不再符合绿色食品标准要求的，标志使用人应当立即停止标志使用，并通过省级工作机构向中国绿色食品发展中心报告。    **第四章 监督检查**  **第二十三条** 标志使用人应当健全和实施产品质量控制体系，对其生产的绿色食品质量和信誉负责。  **第二十四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加强绿色食品标志的监督管理工作，依法对辖区内绿色食品产地环境、产品质量、包装标识、标志使用等情况进行监督检查。  **第二十五条** 中国绿色食品发展中心和省级工作机构应当建立绿色食品风险防范及应急处置制度，组织对绿色食品及标志使用情况进行跟踪检查。  　　省级工作机构应当组织对辖区内绿色食品标志使用人使用绿色食品标志的情况实施年度检查。检查合格的，在标志使用证书上加盖年度检查合格章。  **第二十六条** 标志使用人有下列情形之一的，由中国绿色食品发展中心取消其标志使用权，收回标志使用证书，并予公告：  　　（一）生产环境不符合绿色食品环境质量标准的；  　　（二）产品质量不符合绿色食品产品质量标准的；  　　（三）年度检查不合格的；  　　（四）未遵守标志使用合同约定的；  　　（五）违反规定使用标志和证书的；  　　（六）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标志使用权的。  　　标志使用人依照前款规定被取消标志使用权的，三年内中国绿色食品发展中心不再受理其申请；情节严重的，永久不再受理其申请。  **第二十七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伪造、转让绿色食品标志和标志使用证书。  **第二十八条** 国家鼓励单位和个人对绿色食品和标志使用情况进行社会监督。  **第二十九条** 从事绿色食品检测、审核、监管工作的人员，滥用职权、徇私舞弊和玩忽职守的，依照有关规定给予行政处罚或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追究刑事责任。  　　承担绿色食品产品和产地环境检测工作的技术机构伪造检测结果的，除依法予以处罚外，由中国绿色食品发展中心取消指定，永久不得再承担绿色食品产品和产地环境检测工作。  **第三十条** 其他违反本办法规定的行为，依照《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和《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等法律法规处罚。    **第五章 附 则**  **第三十一条** 绿色食品标志有关收费办法及标准,依照国家相关规定执行。  **第三十二条** 本办法自2012年10月1日起施行。农业部1993年1月11日印发的《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1993农(绿)字第1号）同时废止。 |